



# 대구대학교와 (주)이글루시큐리티의 상호교류협약서



**제1조(목적)** 대구대학교와 (주)이글루시큐리티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여 교류·협력함으로써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에 공동 노력하고자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의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가.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의 예비 정보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
- 나. 정보보안 관련학과와 연계한 영남권 최고의 정보보호동아리 육성
- 다. 정보보안 인력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워크숍 및 공동 포럼 개최
- 라. 교육 및 연구관련 지식·정보·도서 및 자료의 공유와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
- 마. 교수 현장연구 및 학생 현장실습(IPP 장기현장실습)에 대한 협조
- 바.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 협조
- 사.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**제3조(비밀유지)** 양 기관은 협력분야를 공동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양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4조(효력발생 및 유지)**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그 유효 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**제5조(협약의 변경)** 양 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한다.

제6조(협약의 해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합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(신의 성실의 의무)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양 기관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의 원칙하에 다양하게 협력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.

2015. 7. 31.



총 장 홍 덕 톨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대표이사 이 득 춘

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-42 원방빌딩 5층